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767호 2024. 2. 20.(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26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727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728호	남해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729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12
남해군 조례 제2730호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731호	남해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732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 조례 제2733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734호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735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2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31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7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12호	남해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아난티 남해리조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9
남해군 고시 제2024-13호	남해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64
남해군 고시 제2024-14호	남해군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68
남해군 고시 제2024-16호	대곡지구 외 2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시계획 고시	7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190호	『2024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82
남해군 공고 제2024-192호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사업(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85
남해군 공고 제2024-211호	노도호 선장 채용 공고	87
남해군 공고 제2024-213호	남해대교 전면 통행금지 공고(노량삼거리~남해대교 회전교차로)	90
남해군 공고 제2024-219호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 소로2-10호선)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94
남해군 공고 제2024-237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96
남해군 공고 제2024-25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97

회 략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26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5조” 를 “법 제36조의3”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위원회” 를 “군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 8.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③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① 지방보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 1. 공사·시설 표지판 : 3천만원
- 2. 물품·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한 사업
-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표지판의 종류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장비·물품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의 형식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표지판의 규격 등은 별표 2에 따르며,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표지판의 설치 위치)** ①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건립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을 준공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시설·장비·물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비·물품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원내용에 맞게 표지판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판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한다.

**제2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방보조금지원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및 내용(제16조제2항 관련)

1. 공사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사업자명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설·장비·물품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장비·물품**

보조금교부기관 : 남해군

사업자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

이 시설·장비·물품은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구입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보조금교부기관 : 남해군

사업자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

이 시설은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등(제16조제3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비고
	최 대	최 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가로 : 3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 하게 작성

※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곳의 특성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 번호	관리 부서	사업명	보조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 표지판 종류별로 별도 작성

남해군 조례 제2727호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 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 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로 한다.

②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설치하여 관리·운용” 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로 한다.

③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로 한다.

④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로 한다.

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 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로 한다.

⑥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 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728호

##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29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해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법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3조에 따라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남해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법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남해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남해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받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남해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0호

##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섬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군수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해양·관광 등 섬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투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1호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해군 관할구역 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

9조에 따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해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남해군의회 의원
  - 나.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2호

##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를 각각 “이동지원센터”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 를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3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남해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11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신진단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 라.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나.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산일로부터 1년

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하여 교통약자” 를 “통하여” 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행지역 외” 를 “운영의 범위 외” 로, “운행지역 등” 을 “운영의 범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 를 “제3항제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운행지역을” 을 “운영의 범위를”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운행지역을” 을 “이 경우 운영의 범위를” 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근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을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5” 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3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 을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군민” 을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 안전을” 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4호

##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남해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  
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5호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주민청구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민청구조례안의 이름,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남해군 공보, 남해군 게시판·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준비 및 절차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의장에게 준비된 주민청구조례안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이유		
주요내용	○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공동대표자용 [ ]청구 · [ ]철회 ·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도로명 주소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의장

직인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청구인명부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 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방법

-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청구인명부

청 구 명 :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읍·면(총○○권 중 제○권)

남해군 총 서명 주민 수 : 명

○○읍·면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읍·면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입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31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을 “절대보호구역” 으  
로,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를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 놀이터” 를 “어린이놀이기구 :  
놀이기구”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버스·택시승강장 : 각 표시판으로부터” 를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시판으로부터 직선거리” 로 하  
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허가부지 내
6.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 가스충전소 허가부지 내

제3조제2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12호

남해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아난티  
남해리조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지난 남해군 고시 제2023-57호(2023.4.26.)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과 획지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2. 5.

남 해 군 수

1.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2. 면적 : A = 831,930m<sup>2</sup>
3.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831,930	경상남도고시 제2004-19 (2004.01.1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 면적 변경 (남측 골프코스 그늘집 신축사업)	○ 남측 골프코스 그늘집 주변 현황의 측량 오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 면적 변경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1,930	-	831,930	100.00	-
체육시설용지	717,710	-	717,710	86.27	-
체육시설	350,211	감) 134	350,077	42.08	-
골프코스	336,726	감) 134	336,592	40.46	I-1
코스시설	225,751	증) 1	225,752	27.14	
그늘집2	720	감) 295	425	0.05	
화장실	250	-	250	0.03	
연습그린	833	-	833	0.10	
저류지	79,639	-	79,639	9.57	
관리도로	29,533	증) 160	29,693	3.57	
직원 숙소	2,945	-	2,945	0.35	I-2
클럽하우스	1,723	-	1,723	0.21	I-3
축구장	5,933	-	5,933	0.71	I-4
코스관리동	2,884	-	2,884	0.35	I-5
공공시설	23,951	-	23,951	2.88	-
주차장	4,223	-	4,223	0.51	I-6
도로	17,198	-	17,198	2.07	I-7
오수처리장	2,530	-	2,530	0.30	I-8
녹지	343,548	증) 134	343,682	41.31	-
원형보전	82,182	-	82,182	9.88	I-9
조성	261,366	증) 134	261,500	31.43	I-10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광·휴양시설용지	114,220	-	114,220	13.73	-
숙박시설	72,520	-	72,520	8.72	-
휴양콘도미니엄	10,145	-	10,145	1.22	II-1
	903	-	903	0.11	II-2
	2,582	-	2,582	0.31	II-3
	12,397	-	12,397	1.49	II-4
	3,750	-	3,750	0.45	II-5
	4,657	-	4,657	0.56	II-6
	4,141	-	4,141	0.50	II-7
	4,225	-	4,225	0.51	II-8
	2,800	-	2,800	0.34	II-9
	207	-	207	0.02	II-10
	14,350	-	14,350	1.72	II-11
	12,363	-	12,363	1.49	II-12
휴양문화시설	1,434	-	1,434	0.17	-
피크닉장	734	-	734	0.09	II-13
관광안내센터	700	-	700	0.08	II-14
공공시설	13,470	-	13,470	1.62	-
주차장	2,039	-	2,039	0.25	II-15
도로	4,554	-	4,554	0.55	II-16
	2,190	-	2,190	0.26	II-17
	3,999	-	3,999	0.48	II-18
	688	-	688	0.08	II-19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26,796	-	26,796	3.22	-
원형보전	142	-	142	0.02	II-20
	26	-	26	0.00	II-21
	806	-	806	0.10	II-22
	126	-	126	0.01	II-23
	5,091	-	5,091	0.61	II-24
	568	-	568	0.07	II-25
	9,294	-	9,294	1.12	II-26
	5,123	-	5,123	0.62	II-27
	472	-	472	0.05	II-28
조성	529	-	529	0.06	II-29
	1,064	-	1,064	0.13	II-30
	104	-	104	0.01	II-31
	2,717	-	2,717	0.33	II-32
	734	-	734	0.09	II-33

# 남 해 군 공 보

(54) 제 767 호

2024년 2월 20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 로	1	783	7,047	-	-	-	1	783	7,047	-	-	-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정	소로	2	1	9	보조 간선 도로	783	중로3-1	308-4잡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284호 ( '04.10.14.)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계		717,710	-	-	717,710	717,710	
I-1	I	717,710	I-1	평산리 482-1잡 일원	336,726	336,592	골프코스
I-2			I-2	덕월리 282-3전 일원	2,945	2,945	직원숙소
I-3			I-3	덕월리 306-2임 일원	1,723	1,723	클럽하우스
I-4			I-4	덕월리 산21-18임 일원	5,933	5,933	축구장
I-5			I-5	덕월리 산35-5임 일원	2,884	2,884	코스관리동
I-6			I-6	덕월리 282-5도 일원	4,223	4,223	주차장
I-7			I-7	덕월리 311-3잡 일원	17,198	17,198	도로
I-8			I-8	덕월리 312-1전 일원	2,530	2,530	오수처리장
I-9			I-9	덕월리 307-2임 일원	82,182	82,182	원형보전녹지
I-10			I-10	덕월리 311-1잡 일원	261,366	261,500	조성녹지



2) 관광·휴양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기정	변경		
계		114,220	-	-	114,220	114,220		
II-1	II	114,220	II-1	덕월리 320임 일원	10,145	10,145	휴양 콘도 미니엄	
II-2			II-2	덕월리 316임 일원	903	903		
II-3			II-3	덕월리 307-4임 일원	2,582	2,582		
II-4			II-4	덕월리 306-11임 일원	12,397	12,397		
II-5			II-5	덕월리 304-3임 일원	3,750	3,750		
II-6			II-6	덕월리 303-1임 일원	4,657	4,657		
II-7			II-7	덕월리 270-1임 일원	4,141	4,141		
II-8			II-8	덕월리 269임 일원	4,225	4,225		
II-9			II-9	덕월리 산9-4임 일원	2,800	2,800		
II-10			II-10	덕월리 산7임 일원	207	207		
II-11			II-11	덕월리 산14-3임 일원	14,350	14,350		
II-12			II-12	덕월리 340임 일원	12,363	12,363		
II-13			II-13	덕월리 266-11임	734	734		피크닉장
II-14			II-14	덕월리 307-17임 일원	700	700		관광안내센터
II-15			II-15	덕월리 309-22임 일원	2,039	2,039		주차장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			
					기정	변경		
II-16	II	114,220	II-16	덕월리 309-16임 일원	4,554	4,554	도로	
II-17			II-17	덕월리 322-1전 일원	2,190	2,190		
II-18			II-18	덕월리 323-17임 일원	3,999	3,999		
II-19			II-19	덕월리 307-17임 일원	688	688		
II-20			원형녹지	II-20	덕월리 307-11임 일원	142	142	
II-21				II-21	덕월리 307-17임 일원	26	26	
II-22				II-22	덕월리 307-12임 일원	806	806	
II-23				II-23	덕월리 307-10임 일원	126	126	
II-24				II-24	덕월리 269-8임 일원	5,091	5,091	
II-25				II-25	덕월리 278전 일원	568	568	
II-26				II-26	덕월리 산13임 일원	9,294	9,294	
II-27				II-27	덕월리 323-11임 일원	5,123	5,123	
II-28				II-28	덕월리 340 일원	472	472	
II-29				조성녹지	II-29	덕월리 334임 일원	529	529
II-30					II-30	덕월리 266-9임 일원	1,064	1,064
II-31					II-31	덕월리 266-2임 일원	104	104
II-32					II-32	덕월리 산5-2임 일원	2,717	2,717
II-33					II-33	덕월리 320-2임 일원	734	73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1)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2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직원숙소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3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클럽하우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4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축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5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코스관리동)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6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8	용 도	지정용도	오수처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체육 시설 용지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2)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 II-3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4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5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6 ~ II-8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9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0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경비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1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2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9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3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피크닉장 및 부대시설(관광 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4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안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 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남해군 고시 제2024 - 13호

## 남해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남해군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 2. 1.

## 남 해 군 수

### 1.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남해군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
- 5) 그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4년, 목표연도 2028년
- 2) 공간적 범위 : 남해군 전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황	148 (13.9)	430 (40.3)	285 (26.7)	203 (19.0)	1,066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단독주택	단독 외 주택	합 계
현황	962 (90.2)	104 (9.8)	1,066 (100.0)

나.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황	139 (13.8)	406 (40.3)	270 (26.8)	193 (19.1)	1,008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단독주택	단독 외 주택	합 계
현황	915 (90.8)	93 (9.2)	1,008 (100.0)

3. 빈집정비계획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중심의 희망농촌 구현

나) 계획목표

-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고 싶은 희망농촌
-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따뜻한 상생농촌

- 다시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지역자원 조성

2) 추진전략

가) 등급별 전략

- 1·2 등급(일반빈집) : 복지형 주거공간,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 3·4 등급(특정빈집) :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나) 주택유형별 전략

- 단독주택 : 일반빈집은 리모델링 후 활용, 특정빈집은 철거 및 정비
- 공동주택 : 주민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
- 빈집우선정비구역 : 생활 SOC 설치, 공간 활용성 제고
- 생활 SOC 공급 : 주민주도 주거환경 정비 유도

나. 철거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합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개소	464	92	92	92	92	96
금액	6,960	1,380	1,380	1,380	1,380	1,440

※ 철거 예산 : 호당 최대 15백만원

다.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단위 : 호, 백만원)

안전조치 계획	합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개소	175	35	35	35	35	35
금액	875	175	175	175	175	175

※ 안전조치 예산 : 호당 최대 5백만원

(단위 : 호, 백만원)

안전관리 계획	합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개소	1,440	288	288	288	288	288
금액	181.6	36.3	36.3	36.3	36.3	36.3

※ 안전관리 예산 : 연간 36,336천원 (DM발송비, 안전관리비, 빈집플랫폼유지비 등)

라. 철거 후 활용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합 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쉼터 /텃밭	개소	28	5	5	5	5	5
	금액	280	50	50	50	50	50
마을 주차장	개소	35	7	7	7	7	7
	금액	350	70	70	70	70	70

※ 철거 후 조성 예산 : 호당 최대 10백만원

마. 재원조달계획

1)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확대·조성하여 빈집정비 추진

- 철거 정비사업 : 총 6,960백만원
- 안전조치 및 관리 정비사업 : 총 1,056백만원
- 철거 후 활용사업 쉼터/텃밭 : 총 280백만원
- 철거 후 활용사업 주차장 : 총 350백만원
- 리모델링 활용사업 : 총 800백만원

2) 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

- 농촌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빈집 활용

3) LH의 빈집 매입계획을 통해 빈집활용

- 향후 LH토지비축사업의 매입/전세 임대사업을 매입계획과 연계하여 별도의 계획수립 및 추가적인 정비사업 추진

4) 기타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등 예산 투여 및 공모사업 지원, 민간투자 등의 연계
- 국고예산(농식품부, 환경부 등)을 활용하여 빈집정비 사업 추진
- 빈집 플랫폼 운영하여 자율적인 빈집거래(매매·임대) 기반 조성

남해군 고시 제2024 - 14호

## 남해군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

### 남 해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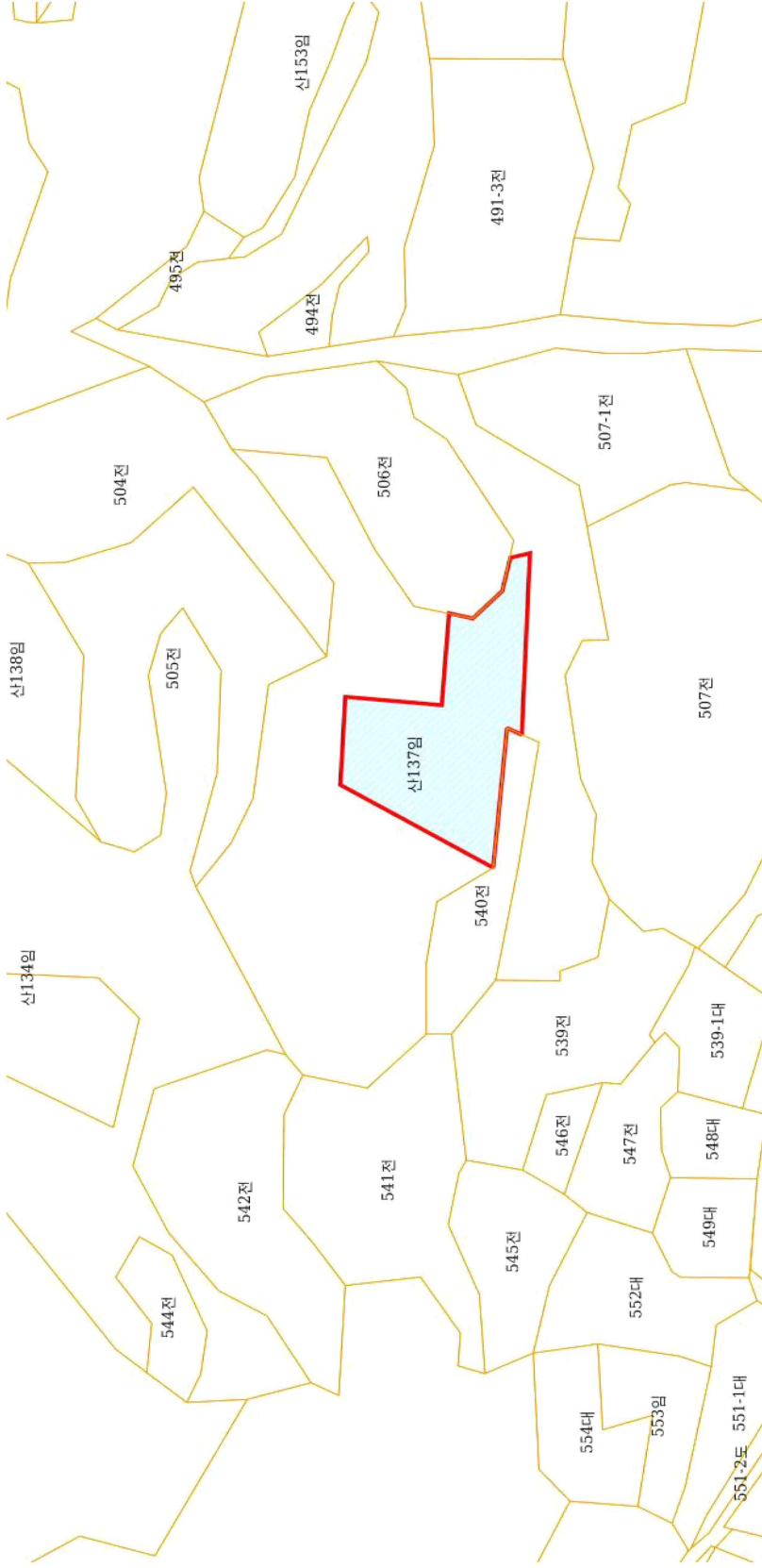
1. 해제위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산137
2. 해제면적 : 472.43㎡
3. 해제도면 : “붙임” 참조
4. 해제사유 : 공익사업
5. 해제연월일 : 2024. 2. 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산림공원과(☎055-860-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필지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 도면 1부.

### 사방지 지정 해제 조서

사방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사방지 해제		해제사유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면적 (㎡)	년도				사업별
남해	서	서상	산 137	2,678	472	04/4/27	예방	472	공익사업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제3호)	

사방지 지정해제 구역도면



<모기>  : 사방지 해제 구역

<해제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방지 현황 (㎡)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량	
남해군 서면 서상리	1필지	임야	2,678	472.43	472.43	0	420m×297m(백상지 809/㎡)
	산 137		2,678	472.43	472.43	0	

남해군 고시 제 2024 - 16호

### 대곡지구 외 2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곡지구 외 2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855-1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L = 347m	860	'2022. 1. 1. ~ 2024. 12. 31.	남해군수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190-3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L = 575m	1,200	'2022. 1. 1. ~ 2024. 12. 31.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92-10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L = 600m	800	'2022. 1. 1. ~ 2024. 12. 31.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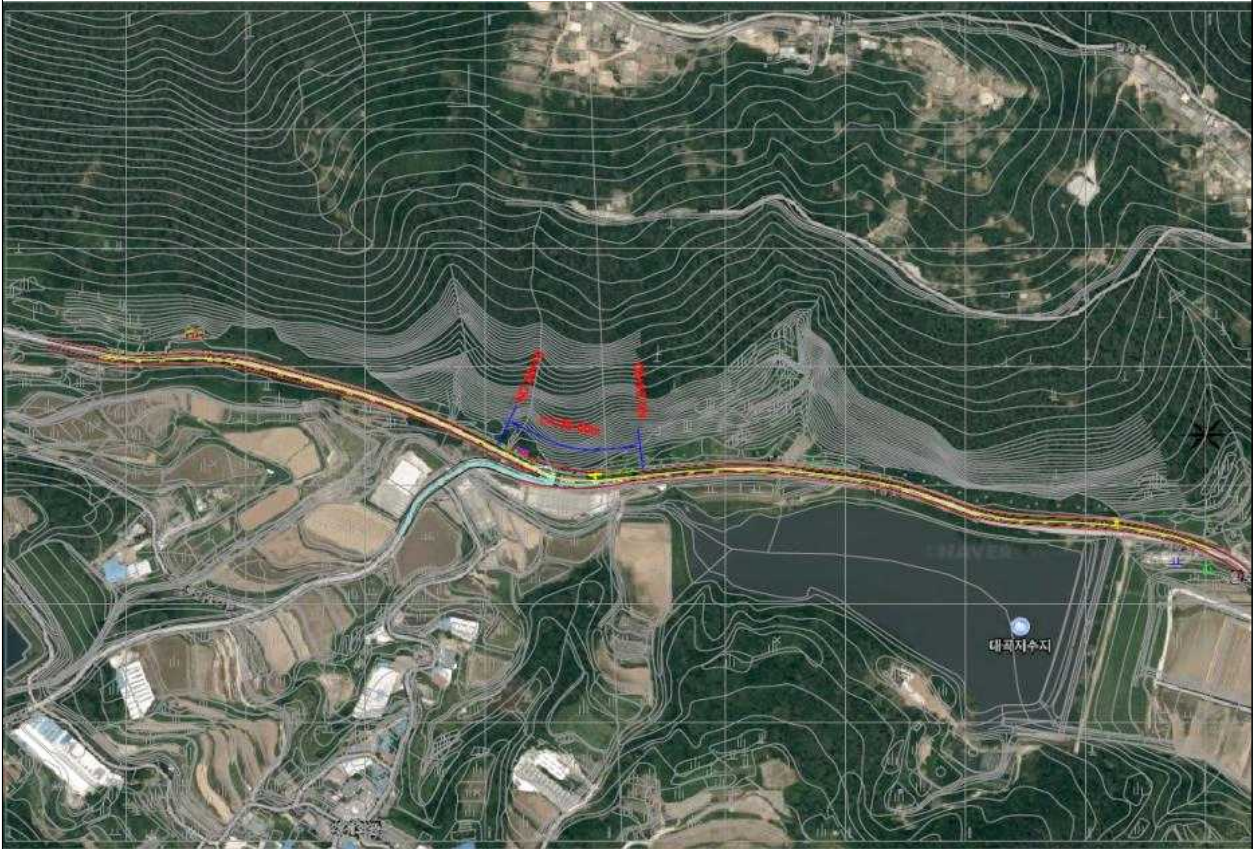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

**7.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구별 각 1부.  
 2.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구별 각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사 업 명 :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 업 명 :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 업 명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3,716	13,716						
1	삼동면 동천리	산 190 - 4	임	143	143	남해군					
2	삼동면 동천리	산 190 - 3	도	299	299	남해군					
3	삼동면 동천리	산 187 - 1	도	148	148	국토교통 부					
4	삼동면 동천리	산 187 - 2	도	595	595	남해군					
5	삼동면 동천리	산 189 - 1	도	1,214	1,214	김영 김0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양읍 보곡3길 40, 106동 2404호				지분13분의2
6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15	임	204	204	강0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3-1				
7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6	도	2,305	2,305	남해군					
8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10	도	626	626	남해군					
9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11	도	115	115	남해군					
10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7	도	1,469	1,469	박0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12				
11	삼동면 동천리	산 196 - 8	도	118	118	박0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12				
12	삼동면 동천리	291 - 5	도	77	77	남해군					

13	삼동면 동천리	293 - 6	도	31	31	남해군	경북 상주시 성동2길 45-16(성동동)				
14	삼동면 동천리	293 - 9	도	28	28	김0래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132				
15	삼동면 동천리	293 - 4	답	43	43	김0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15				
16	삼동면 동천리	295 - 2	도	79	79	김0성	경북 상주시 성동2길 45-16(성동동)				
17	삼동면 동천리	293 - 8	도	1	1	김0래					
18	삼동면 동천리	293 - 7	도	22	22	남해군					
19	삼동면 동천리	293 - 2	도	96	96	남해군					
20	삼동면 동천리	산303 - 5	도	198	198	남해군					
21	삼동면 동천리	산303 - 10	도	211	211	빈0오	삼동면 동천리266				각 지분6분액
						김0옥	삼동면 동천리 39				
						김0익	삼동면 동천리266				
						이0익	삼동면 동천리269				
22	삼동면 동천리	산303 - 8	도	86	86	빈0오	삼동면 동천리266				각 지분6분액
						김0옥	삼동면 동천리 39				
						김0익	삼동면 동천리266				
						이0익	삼동면 동천리269				
23	삼동면 동천리	산303 - 14	임	73	73	남해군					
24	삼동면 동천리	산307 - 14	도	72	72	문0암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30				
25	삼동면 동천리	산307 - 7	도	2,281	2,281	남해군					
26	삼동면 동천리	산307 - 16	임	1,161	1,161	남해군					
27	삼동면 동천리	산307 - 12	도	790	790	남해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6,656	1,502						
1	남면 상가리	산108 - 2	도	4,993	114	남해군					
2	남면 상가리	산 92 - 2	도	4,022	330	남해군					
3	남면 상가리	산 92 - 9	읍	477	35	남해군					
4	남면 상가리	1295	도	418	101	남해군					
5	남면 상가리	산 92 - 10	읍	39	39	남해군					
6	남면 상가리	산 92 - 5	도	80	43	남해군					
7	남면 상가리	산 91 - 1	읍	11	11	김0기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사정[미등기]
8	서면 대정리	산 161 - 5	도	104	104	남해군					
9	서면 대정리	산 160 - 6	도	2,051	498	남해군					
10	서면 대정리	산 170 - 5	도	280	28	남해군					
11	서면 대정리	산 160 - 2	도	2,876	160	국토교통 부					
12	서면 대정리	산 162 - 5	읍	1,272	986	남해군					

297mm×210mm[백상지 80g/㎡]

# 막 해 군 이 표

13	서면 대정리	산 162 - 6	임	214	214	남해군						
14	서면 대정리	산 160 - 9	임	352	352	남해군						
15	서면 대정리	산 160 - 8	임	1,285	1,096	남해군						
16	서면 대정리	산 159 - 4	도	1,871	19	남해군						

297mm×210mm[백상지 80g/㎡]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190호

2024년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농어촌의 노후·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남해군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남 해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5세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군비(100%)	비 고
10,000	10,000	세대 당 20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범위

- 창호나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 관련 부분의 공사에 한함

※ 창고, 대문, 담장 등 거주와 관련 없는 수선, 가구 및 집기(싱크대) 구입 및 설치 제외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 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지급)에 한함.)

- 전입신고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

- 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세대주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인 경우)
- ※ 수리 후 전입신고 가능(전입신고 및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 불가)
- ▶ 세대주 소유의 주택 및 세대원 가족명의(배우자, 자녀 등) 주택은 가능
- ▶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서(3년 특약) 및 소유자의 수선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전 수선을 완료 한 세대
- 타시·군·구에서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
- 철거, 신축 및 증축은 제외
- 불법건축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사망 후 미상속 주택 제외

□ 신청 안내 및 자격 검토

- 신청장소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신청문의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4. 2. ~ ’ 24. 12. ( 연도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
- 지원 자격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확인서류
빈집 해당여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전입예정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빈집)	마을이장 확인서, 전력 사용량 등
이주 기간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상 타 시·군·구 거주	주민등록초본
신청 자격	세대주(주민등록등본 기준)	주민등록등본
거주 기간	남해군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 (※신청당시 미전입자는 전입 후 실거주 3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	주민등록초본 현지조사
주택 확인	세대주 소유 주택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함께 전입하는)명의인정,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3년이상) 및 수선 동의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현지조사

□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정산
- ※ 유의사항 : 보템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에 신청
- 보조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내역서(업체도장 필), 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해야하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공사하지 않도록 하고, 첨부서류 미비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첨부.
- 사업완료 후 보조금은 기체출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조  
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로 이체하고 증빙하여야 정산 가능하므로 다른  
지출수단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청구서와 같이 제  
출해야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사후 관리

- 교부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등 교부 조건을 위반  
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3개월 이내에 타 지역 진출  
등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실태 등 연1회 이상 점검

남해군 공고 제2024 - 192호

##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사업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1998. 3. 12.)로 최초 결정되고, 지난 남해군 고시 제2023-132호(2023. 9. 20)로 최종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의 군계획시설 사업(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사업
- 명 칭 :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223,005㎡(금회 건축시설 용지 3,800㎡)
- 건축면적 : 1,097.43㎡(금회 증축)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문화체육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문화체육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및 문화체육과(☎055-860-8682)에 비치】**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체육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남해군 공고 제2024 - 211호

## 노도호 선장 채용 공고

노도호 도선운항을 위하여 선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박 운항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노도도선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백만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기간	운항구간
노도호 선장	1명	도선운항 및 부대시설 등 도선 및 기관 전반에 대한 사항 관리, 승하선 승객 보조, 선박 안전상태 관리	2024. 3. 1. ~ 2025. 2. 28.	노도 ~ 벽련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매주 화요일 휴무
- 운항횟수 : 1일 6회 운항(승선정원 초과 시 추가운행 필수)  
(운항 시간표 참고)
- 월 급 여 : 2,600,000원
- 상 여 금 : 기본급 200%(설, 추석 명절 연 2회)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건강한 사람
-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필수면허를 소지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필수면허(아래 면허 중 1개 이상)

- 소형선박조종사
- 6급항해사(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이수)
- 6급기관사(소형선박직무항해교육이수)

※ 필수교육(아래 교육 모두 이수)

- 상급안전교육
- 연안선직무교육
- 인권교육

**4.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15.(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055-860-3444

**5.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직무수행계획 설명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구체적인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추후통보

※ 직무수행계획 설명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3.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노도호 선장 지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 등록 시 제출)
- 면허·자격증 1부.
- 교육 이수(수료)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되는 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 후 신체검사서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연락처 : 055-860-34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213호

[] 통행의  
금지·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남 해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2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차마 및 건설기계 일체, <b>사람(대상 추가)</b>	구간	남해군 설천면 노량 삼거리 ~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
기간	2024년 2월 14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b>(차량 및 도보 통행 전면 금지)</b>		
이유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공사 진행 시 추락,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그 밖의 사항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승강장 및 셔틀차량 운행		
첨부서류: 통행금지 위치도 및 셔틀차량 운행 시간표			

통행금지 계획도



# 셔틀운행 노선도 및 현황



셔틀차량 운행경로(덕신→노랑→감암→임시승강장), 월곡마을은 도보로 이동



월곡교차로 임시승강장 상세 위치

## 시외버스 운행 시간표

부 산		진 주		마 산, 창 원	
터미널 출발	임시승강장 출발	터미널 출발	임시승강장 출발	터미널 출발	임시승강장 출발
06:20	06:30	07:00	07:10	06:40	16:50
07:20	07:30	07:40	07:50	09:35	19:45
08:25(남양)	08:45(남양)	08:05	08:15	12:55	13:05
09:30	09:40	08:40	08:50	16:25	16:35
10:40	10:50	09:20	09:30	19:00	19:10
12:50	13:00	10:00(남양)	10:20(남양)	전시간 곤양 경유	
14:05	14:15	11:15	11:25		
16:15	16:25	12:10	12:20	<b>(대 전), 서 울</b>	
17:20	17:30	12:45	12:55	터미널 출발	임시승강장 출발
18:20(영화)	18:30(영화)	13:30	13:40	06:00	06:10
19:20	19:30	14:20	14:30	07:00	07:10
영화여객 진교 경유 안함		15:30	15:40	08:00(대전)	08:10(대전)
		16:30	16:40	10:00	10:10
		17:50	18:00	13:00	13:10
		18:50	19:00	16:00(대전)	16:10(대전)
		20:00	20:10	18:00	18:10

남해군 공고 제2024 - 219호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 소로2-10호선) 결정(변경)(안)

###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2-1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2.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2-10호선)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 로	2	10	8	국지 도로	261	남해읍 북변리 285-19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경남도고시 제127호 (1977.01.27.)	도시 지역
변경	소 로	2	10	8	국지 도로	192	남해읍 북변리 282-68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0	소로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감69m)</li> <li>- B = 8m</li> <li>- L = 261m → 19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2-10호 노선구간 중 전통시장을 통과하는 일부구간을 해제하여 전통시장 내 단지내 도로로 관리코자 금회 군관리계획(도로)을 변경하고자 함</li> </ul>



남해군 공고 제2024 - 237호

###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권 내 유어장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 ○ 유어장 지정 현황

지정 받는 자	지정번호	유어장명	지정 위치	면적(ha)		지정기간
				어업권 면적	유어장 지정 면적	
전도어촌계	남해군 제00068호	전도어촌계 갯벌체험장	삼동면 금송리 전도지선 (마을어업 제193호)	36	5	2024. 02. 08. ~ 2033. 12. 30.
회룡어촌계	남해군 제00069호	회룡어촌계 유어장	서면 중현리 회룡지선 (마을어업 제213호)	14.5	7	2024. 02. 08. ~ 2033. 12. 30.
			서면 중현리 회룡지선 (마을어업 제626호)	4	2	

2024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2024 - 256호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4.02.14. ~ 2024.02.28.(2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15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의견제출기간 : '2024.02.14. ~ 2024.02.2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2-3번지 외 1필지
  - 토지소유자 : 정0례(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12) 외 1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 공사명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판입	공부	실제	당초	판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성명	
1	장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2-3	산142-3	도	도	753	793	1	동경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12 송장남 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12	정아례				
2	장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2-6	산142-6	도	도	992	992	1	동경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12 송장남 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12	한아서				
<b>토지합계2필지</b>						<b>1,785</b>	<b>1,785</b>				<b>2인</b>			